제31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남양주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한근수 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서

2026. 2.

자치행정위원회

남양주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제안경과

○ 본 조례안은 2026년 1월 27일 한근수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같은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남양주시 관내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의 ESG 경영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등(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제4조)

다.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라.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안 제6조)

마.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7조)

바.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규정(안 제8조～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1

나. 예산조치 : 붙임2 (비용참조)

다. 관련부서 : 지역경제과

라. 입법예고 : 2026. 1. 27.(화) ~ 2026. 2. 1.(월)(5일간)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관내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의 ESG 경영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경제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ESG 경영이 글로벌 규범으로 정착되어 기업 및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관내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의 ESG 경영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시의성과 지역경제의 지속가능성 확보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법령의 범위내에서 제정하는 자치 조례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 참고사항

■ ESG 경영 지원 관련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례 현황

- 전국 : 111개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등 20개 광역 포함)
- 경기도 內 : 12개 시

<표> 경기도 내 ESG 경영 지원 관련 조례 제정 현황

No.	조례명	지역명	시행일자
1	과천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과천시	2024. 7. 1.
2	광명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광명시	2024. 10. 1.
3	군포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군포시	2024. 7. 9.
4	부천시 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부천시	2022. 12. 26.
5	성남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성남시	2023. 8. 7.
6	수원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수원시	2023. 3. 23.
7	안양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안양시	2025. 7. 15.
8	여주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여주시	2024. 10. 2.
9	오산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오산시	2023. 12. 22.
10	의왕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의왕시	2023. 12. 20.
11	파주시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 조례	파주시	2024. 12. 26.
12	포천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포천시	2023. 12. 27.

붙임1 관계법령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사회·환경 전 분야에서 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미래 발전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 또는 완화하며,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 및 주요 국가의 정책을 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사업자·국민 및 민간단체에 정보의 제공 및 재정 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국민들이 지속가능발전 정책 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며 국민들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과 사업자의 책무) ① 국민은 국가와 인류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 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과 지속가능경영에 기초하여 환경적·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23조(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 다소비형 산업구조가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및 산업구조로 단계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및 산업구조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불안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기업이 경제적 수익성, 사회적 책임성, 환경적 건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나이, 장애 여부, 출신지역 등에 따른 모든 차별을 철폐하고 소득 불평등과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정·임금·사회보장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는 등 자원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조세제도 및 금융제도를 환경친화적으로 개편·운영하고, 국민의 소비 및 생활 방식이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식물의 서식지와 생태적으로 우수한 자연환경자산 및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산 등을 조화롭게 보존·복원 및 이용하여 이를 관광자원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지역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관광을 촉진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도로·항만·상하수도·녹지 등 사회기반시설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접근성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8조(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홍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사업자·국민 및 민간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 학교 교육을 강화하고, 평생교육과 통합·연계한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확대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확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사업자·민간단체 등을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수행,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신문·방송·인터넷포털 등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⑥ 공영방송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하고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공익광고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2 **비용추계 관련 자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4. 작성자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장 박미경